IRB(Institutional Review Board)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소개자료

□ IRB의 목적과 받는 이유

IRB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생명·의과학 연구의 윤리적·과학적 타당성 심의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의 법률·연구윤리 지침 준수를 장려함으로써 연구자 보호와 인간 존엄 가치를 실현합니다.

□ IRB 근거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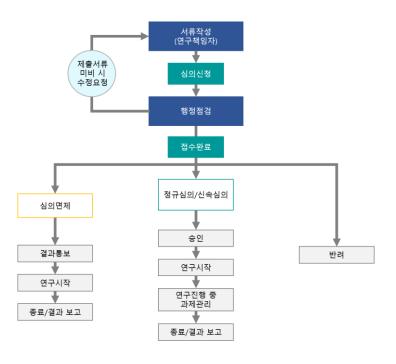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(약칭: 생명윤리법) 제 15조, 제 36조

□ IRB를 받을 수 있는 곳

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'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심의를 진행하는 기관(학교, 기업, 병원 등) 내 자율적 윤리기구로 법상 구성 요건을 갖춘 다면 결성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신청자는 데이터 구축 기관 외에도 구성요건을 갖추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이라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□ IRB 관련 절차

< IRB 진행 절차 >



※ 자세한 내용은 각 IRB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.

□ IRB 설명 링크

보건복지부_공공보건_생명윤리정책

http://www.mohw.go.kr/react/policy/index.jsp?PAR_MENU_ID=06&MENU_ID=06300401&PAGE=1&topTitle

